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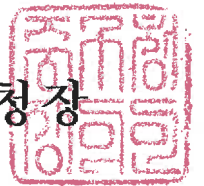
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-47호

이 규칙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
· 규칙심의회,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
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「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」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 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4년 5월 1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

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- 기금과 타 회계·기금 간 예수·예탁 절차, 기간, 이율 등 기금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 마련을 위한 규칙을 제정하여 기금의 안정적 운용 도모

2. 주요내용

○ 예수에 관한 사항(안 제2조~제4조)

- 타 회계(또는 기금)의 여유자금의 예탁 기간은 통합계정에 자금이 입금된 날부터 1년으로 하고, 공금예금 수준의 이율을 적용하여 예탁 회계(또는 기금)에 이자를 보전하되 기금의 운용 및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
- 예수금의 기한 전 상황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, 상환 필요시 기금운용관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규정

○ 예탁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- 예탁 절차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과 예탁 부서의 장이 각각 이행해야 할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

3. 의견제출

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 : 기획예산과장, 주소 :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기획예산과, 전화 : 02-3396-4914, 팩스 : 02-3396-8657, email : ldh4238@junggu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※ 이 규칙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(<http://www.junggu.seoul.kr>)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